

# 기 술 정 보



월간 기술정보지 통권 제48호 (2015년 7호)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발행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조감도**

## 목 차

### ■ 건설관련 소식 ..... 1

-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조기 개통
- 거가대로 36년간 1,612억원 추가 재정절감
- 행정부지사 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 점검
- 건축물 옥상녹화로 녹색도시 만든다
- 노후·불량주택 새집만들기 지원
- 임대아파트 분양가격 개선 시택 전국 전화
-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세계에 홍보
-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재정비 추진
- 경남진주혁신도시 정주여건 점검회의 개최
- 골목길 환경개선으로 범죄예방 줄인다
- 도시계획위원회 민간 전문가로 재구성
- 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94곳 아웃
- 항공산업을 경남의 새로운 경제축으로

### ■ 지식정보 ..... 11

- 건축물 감리, 공종단계별 실명제 도입
-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 철판 두께0.5 넘어야
- 고시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 건축산업 새로운 활로를 찾는다
-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일반물류터미널내 제조·판매 허용
- 중개보수 조례개정 완료, 전국적 시행
- 종이계약서는 옛말, 온라인·모바일로 부동산계약
- 지자체장이 주택감리자 실태점검 실시
- 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나면 자동으로 열린다.
- 지자체장이 주택감리자 실태점검. 부실공사 방지
- 우리나라서 가장 긴 50.3km 울현터널

### ■ 최신법령 및 법령해석 ..... 21

### ■ 신기술 정보 ..... 26

### ■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현황 ..... 28

### ■ 기술인 나눔 정보 ..... 30

##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조기 개통

- ▶ 신항제1배후도로 만성정체 해소로 지구개발 사업 촉진 기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청장 허성곤)은 ‘미음 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일환으로 시행 중인 ‘창원~부산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3단계 구간(울하IC~생곡IC 5.48km)이 당초 2015년 12월 11일 개통에서 10월 31일로 조기 개통으로 하루 교통량 4만여 대 분산 효과가 기대된다고 16일 밝혔다.

‘창원~부산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경남도와 경남하이웨이(주)가 2007년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46억 원이며, 1단계 구간(창원시 상북IC~김해시 율해C 17km(불모산터널 포함))은 2013년 10월 11일 개통하여 현재 공용 중에 있고, 3단계 구간을 포함하여 현재 전체 공정을 93%를 보이고 있다.

허성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도로 조기 개통으로 현재 부산신항 물류의 대동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201년 준공) 세산삼거리~가락C구간의 만성적인 정체(서비스수준 "E")가 해소되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사업 촉진은 물론 경남 남동부의 주요도시(마산, 창원, 진해, 김해)와 서부산권 연결을 통해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라고 말했다.

■ 자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본부  
(051)979-5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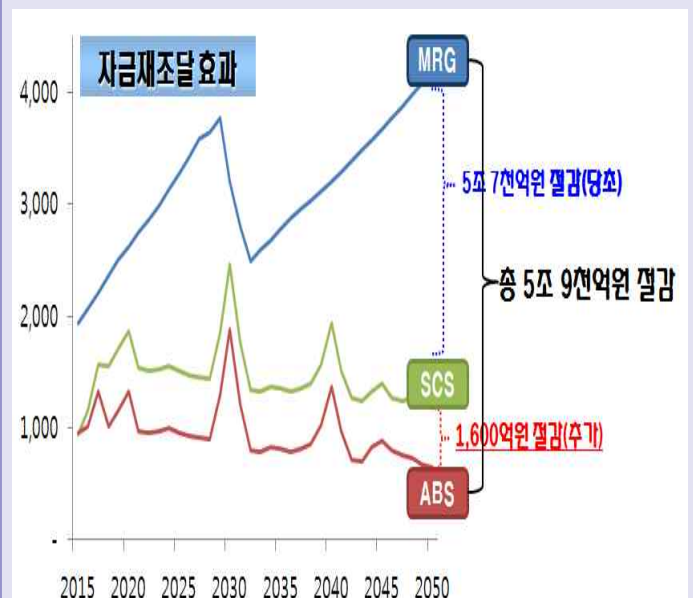
## 거가대로 36년간 1,612억 원 추가 재정절감

- ▶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으로 1,612억원 재정절감 기대
- ▶ 사업권가치기대수익 1,003억 원, 법인세 147억 원, 운영비 462억 원 등

“마른 수건도 다시 짜고, 줄라맨 허리띠도 한 칸 더 줄인다” 거가대로 재정절감을 두고 하는 말이다.

경남도는 25일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으로 사업권가치기대수익 1,006억 원, 법인세 147억 원, 운영비 462억 원 등 앞으로 36년간 1.612억 원의 추가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11월 거가대로 최소운영수익보장(MRG)방식에서 비용보전(SCS)방식으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50년까지 5조 7000억 원의 재정절감을 하였으며, 이번 ABS 발행으로 총 5조 8600억 원의 재정절감으로 지자체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추가 재정절감은 경남도와 부산광역시의 공동 노력으로 ABS를 발행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은 부동산, 매출채권, 기타 재산권과 같은 유·무형의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증권으로서 거가대로의 관리운영권을 담보로 하여 그 담보를 증권으로 전환하여 자본시장에서 현금화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자산유동화라고 한다.

경남도와 부산광역시가 공동 발행한 3,000억 원의 ABS는 3.7%의 금리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여 발행된다.

거가대로의 재무적 투자자인 KB자산운용사(GK해상도로(주) 대주단)가 투자한 4.72%대의 투자금에 대한 일부분(3,000억 원)을 차환하여 보다 저금리로 거가대로의 관리운영을 하는 것이다.

현재 경남도와 부산광역시는 KB자산운용사의 거가대로 관리운영권 가치를 1조 5,948억 원을 인정하여 2013년 4/4분기 기준으로 7,974억 원은 변동 금리 4.49%, 나머지 7,974억 원은 고정금리 4.94%로 평균 4.72%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ABS 3,000억 원 발행하여 고정금리 부분의 원금 1,500억 원, 변동금리 부분의 원금 1,500억 원을 상환함으로써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낮춘 것이다.

이번 ABS발행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금재조달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사업시행자와 50:50으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612억 원의 수익 모두가 지난 제1차 변경실시협약(2013.11.11.)에 따라 전액 경남도와 부산광역시로 귀속된다는 사실이다.

경남도는 ABS발행까지 2013년 거가대로 재구조화 못지않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1년 6개월간의 수십 차례 관계기관과 협의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각 기관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ABS발행이 물거품이 될 위기도 있었으나, 끈질긴 협의와 협상으로 관계기관의 긍정적인 협의를 이끌어 내고 신용보증기금의 전향적인 보증 검토와 KB자산운용사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최우수 재정절감 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거가대로 재구조화와 이번 ABS발행으로 엄청난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경남도의 채무감축과 재정건전화 노력이 전국적인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재정점검단 민자지원담당  
(055)211-2923

## 경남도 행정부지사 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 점검

### ▶ 창원 양덕배수장 실제가동 상태 점검

경남도는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2015년 여름철 태풍 및 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24일 오후 2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양덕배수장에서 배수펌프 실제가동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신용수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한 재난취약시설 관리현황'을 청취하고 배수펌프 실제 가동상태, 유수지 쓰레기수거장치 관리실태 및 정전대비 비상발전기 가동상태 등을 직접 점검하였다.

또 배수펌프장 근무자들의 근무수칙 숙지여부와 비상대피계획 및 장비·인력 동원계획 등 매뉴얼 정비 상태를 확인하고 여름철 재난 사전대비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양덕배수장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봉암동 일원 침수우려지역 488,300㎡의 침수 예방을 위하여 1985년에 설치하여 현재 전동펌프 4대, 엔진펌프 1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펌프 유량은 524㎥/분 이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경남지역은 여름철에 잦은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또한 태풍의 진로권에 위치하고 있어 태풍 내습 시 상대적으로 피해발생 빈도가 높은 실정으로 완벽한 사전 대비만이 재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번 윤한홍 행정부지사의 재난취약시설 현장 점검은 이러한 여름철 태풍 및 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 신속한 재난대응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점검으로, 이날 점검에는 서일준 경남도 안전건설국장, 신용수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덕희 마산회원구청 대민기획관 등이 합동점검에 참여하였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도내 195개 배수펌프장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실제 가동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여름철 재해기간이 시작되는 5월 15일부터 전 시군 일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올 여름철에도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안전총괄과 자연재해담당  
(055)211-4543

## 건축물 옥상녹화로 '녹색도시' 만든다

### ▶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4개시 6곳 본격 추진

경남도는 올해 창원시 등 4개시 공공건축물 옥상 6곳에 4억 3천 8백만 원을 투입하여 녹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은 도심의 열섬현상 감소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해 건축물 옥상에 조경수 식재,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토지보상비를 들이지 않고도 도심지역에 다양한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어 효율적인 녹화 방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총 47곳(공공부문 37, 민간부문 10)에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만 7천 4백㎡를 녹색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올해는 5월에 착공한 밀양시 삼랑진읍사무소와 김해시 대청동 장유도서관은 7월 초, 6월에 착공한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과 의창구 의창동 복지회관은 8월 초에 각각 준공할 예정이고, 양산시 물금읍 종합사회복지관과 어곡동 강서주민편의시설은 6월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를 거쳐 10월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도는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개방성 및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을 우선 시행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 기존 건축물의 옥상녹화뿐만 아니라 신축하는 건축물도 평지붕일 경우 건축허가 시 옥상녹화를 권장하는 등 옥상녹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다.

■ 자료 : 도 건축과 친환경건축담당  
(055)211-4425

## 노후·불량 주택 새집만들기 지원

### ▶ 연 2.7%로 최장 20년까지 대출

경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하는 주거환경개선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토지 또는 노후·불량주택과 대학교 주변 및 도시 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을 건축(신축, 개축) 및 개량(증축,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로 주거 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주택에 한한다.

대출한도는 세대당 주택의 건축 및 개량에 소요되는 건물의 총공사비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의 경우 6,000만 원, 다세대주택은 3,000만 원, 다가구주택은 1억 8,000만 원 이내(가구당 2,250만 원)이며, 단, 개량의 경우는 이 금액의 1/2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7%로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주택(노인부양주택 포함)은 연 2.0%의 금리가 적용된다.

신청은 국민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자격 및 가능금액을 안내 받고, 해당 시군(주택관련 부서)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택개량자금 용자 대상자 추천을 받아 우리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택기금포털(<http://nhf.molit.go.kr>) 사이트사업자대출/주거환경개선자금에서 확인하면 된다.

■ 자료 : 도 건축과 친환경건축담당  
(055)211-4425



## 임대아파트 분양가격 개선 시책 전국 전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최 워크숍에서 우수시책으로 발표

경남도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최로 6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전북 부안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개최하는 '2015 시·도 건축 및 도시 관련 공무원 워크숍'에서 도의 우수 시책인 '임대아파트 분양가격 개선'을 발표하였다.

'임대아파트 분양가격 개선' 시책은 2013년도에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시책으로, 분양가격 산정 시 일률적으로 상한가격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오던 기존의 방식을 취득세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분양가격을 산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의 부당이득을 원천 차단하고 임차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무주택 임차인을 위한 친 서민 주택정책이다.

이번 워크숍은 중앙 및 지자체간 다양한 건축·도시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앙정부 및 전국 시·도의 건축·도시 관련 공무원 120여 명이 참석하고 있어 경남도의 이번 사례 발표가 전국적으로 전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고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분야의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2008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된 기구로 「시·도 건축 및 도시 관련 공무원 워크숍」은 2011년도 처음 개최되어,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행사이다.

■ 자료 : 도 건축과 주택관리팀당  
(055)211-4435

##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세계에 홍보

▶ 7월 1일 ~ 3일 서울 COEX에서 '나노코리아 2015' 홍보관 운영

경남도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COEX에서 개최되는 '나노코리아 2015'에 참가하여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과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등 나노관련 인프라를 국내외에 대대적으로 알린다.

도는 지난해 연말 나노융합 국가산단 개발계획이 확정되었고, 올해 초에는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경남의 나노융합산업 육성 정책과 인프라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국가산단 내 우량기업 유치를 위하여 밀양시와 공동으로 '나노코리아 2015'에 참가하여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3주년을 맞이하는 '나노코리아 2015'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과 나노기술연구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세계 40개국 1만 2천여 명이 참여하는 세계2위의 나노산업대전으로 세계 나노기업들의 기술 및 제품 소개와 심포지엄을 통한 세계석학들의 학술분야 교류도 활발히 이뤄지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이다.

행사는 나노기술을 중심으로 첨단 세라믹, 마이크로/MEMS, 레이저, 시제품제작, 바이오 분야 까지 총 6개 분야의 신기술이 '나노융합대전'으로 합동 개최된다.

이를 통해 산업기술 간 협력과 교류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기술거래, 투자유치, 제품거래, 국제협력 등 수출 품목별 맞춤형 비즈니스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참가기업(기관)의 성과창출과 만족에 역점을 두고 있다.

경남 홍보관은 경남도·밀양시·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나노융합국가산단과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를 홍보하고, 부산대, 창원대, 인제대 등 나노관련 대학과 상진미크론, 3SMK, 한특이피, 파브나인 코리아 등 경남 지역의 나노관련 기업들도 함께한다.

특히, 나노코리아는 국내외 나노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세계규모의 나노기술 전시회로서 경남도는 이번 홍보관 운영을 통해 나노융합 국가산단과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등 경남의 나노관련 인프라를 국내외에 소개함으로써 경남 밀양이 첨단 나노융합산업 도시로 발돋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료 : 도 국가산단추진단 나노융합담당  
(055)211-2733

##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재정비 추진

▶ 지방하천 570개소 1,804km 정비 위해 사업비 4조 7,443억 원 반영 건의

경남도는 지방하천의 치수안전도 확보를 위해 2011년 수립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그동안의 각종 여건변화와 사업성과를 반영하여 재정비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미 수립된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2025년까지 지방하천 치수안전도 7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지방하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하천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2025년까지 앞으로 10년간 하천재해예방사업, 생태하천조성사업, 고향의 강 조성사업 등 지방하천 570개소 1,804km 정비를 위해 4조 7,443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미착수된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통합하여 치수안전도 확보를 중심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한 최종 반영여부를 결정하여 2016년 6월까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자료 : 도 하천과 하천시설담당  
(055)211-3933

## 경남진주혁신도시 정주여건 점검회의 개최

경남도와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후 2시 LH 본사 회의실에서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이전한 LH 등 이전공공기관과 관계기관을 초청해 정주여건 및 이전지원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국토부, 경남도, 진주시, 경남진주혁신도시 11개 이전공공기관, 도교육청,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 (주)대방건설 등 민영공동주택 건설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토부 양복완 지원국장을 비롯한 회의 관계자들은 혁신도시 추진상황, 교육여건, 이전지원과제 등 혁신도시 활성화 및 정주여건에 관련한 생활불편 및 건의사항을 토론하고 대책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노동조합 윤기종 부위원장은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주택공급에 불편이 없게 아파트 분양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건의했다.

국토부에서도 2015년12월말 까지 규정되어 있는 주택구입 취득등록세 감면 등 세제 혜택 기간을 2018년말 까지 연장토록 기재부와 협의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의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해결 될 수 있도록 이전기관과 경남도, 진주시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 자료 : 도 서부청사추진단 혁신도시팀당  
(055)211-6483

## 골목길 환경개선으로 범죄예방 줄인다

▶ 경남도, 창원· 밀양시에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 추진

경남도는 올해 창원시와 밀양시에 각각 1억 원을 투입하여 셉테드(CPTED)를 적용, 각종 범죄 예방 및 야간에 안심하고 귀가 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환경개선을 통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셉테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뜻하는 용어로 생활 환경 정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국형 기법이다.

노후 건물이 많고 골목이 좁은 낙후된 주거지역이나 여성 혼자 거주하는 원룸촌 등에 가로등 설치, 방범용 CCTV 설치, 골목 담장 벽화그리기, 마을 안내판 설치, 건물 외벽에 노출된 배관 정비 등 디자인을 통해 환경을 바꿈으로써 범죄를 예방한다.

셉테드는 밝고 깨끗한 곳에서는 범죄 발생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 사례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 되어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초기단계로 지난 4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고시되면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등에 적용이 의무화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도는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창원시와 밀양시에 안심골목길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연내 사업 마무리를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창원시는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범죄발생취약지역(Hot Spot) 5곳을 추천받아 최종 선정 중에 있고 8월경 착공하여 연내 준공 계획이다.

밀양시는 밀양여고 주변 마을을 사업대상지로 이미 선정하고 원활한 사업을 위해 밀양시, 밀양경찰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민, 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앞으로 7월경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다.

도는 셉테드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전파, 시·군 담당공무원 교육, 건축심의·허가 시 셉테드 적용 등 다각적인 시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준용 경남도 건축과장은 “앞으로 건립되는 모든 건축물은 셉테드 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범죄가 많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경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건축과 친환경건축담당  
055)211-4424

## 도시계획위원회 민간 전문가 재구성

▶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매월 위원회 심의 정례화 운영

경남도는 임기 2년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기가 오는 6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도시 관련 민간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재구성 하였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 관련 분야별 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재구성 시에 지역별, 기관별, 전문분야 등을 감안하여 균형있게 구성하였으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설계), 교육, 디자인, 환경, 건축, 교통, 방재, 소방, 농림, 에너지, 관광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총 위원 30명의 90%인 27명으로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는 2015년 6월 11일부터 2017년 6월 10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경남도에서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매월 위원회 심의를 정례화하여 개최하고 있다. 매월 셋째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청기관에서 자료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개별 사안별 심의기준을 구체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 자료 : 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055)211-4324

## 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94곳 아웃!

### ▶ 도내 169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경남도는 지난 4월 도내 437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밝히고 5~6월까지 대한주택건설협회 울산경남지회의 협조를 받아 169개 업체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로 94개 업체는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예정으로, 이는 도내 등록업체의 20%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 업체는 지난 2월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처분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완을 완료하지 않아 이 같은 처분을 받게 되었다.

당초 경남도는 최근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주택경기 상승세로 인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부실·부적격 운영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라는 전수조사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등록말소 이외에도 등록변경 지연 등 경고대상 53곳, 경고 누적으로 인한 영업정지 1개월 7곳,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3개월 14곳, 주택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6개월 1곳 등 75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와 행정처분으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자등록 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지 않는 업체는 더 이상 도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자료 : 도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055)211-4414

## 항공산업을 경남의 새로운 경제 축으로 만들겠다.

### ▶ 항공산업 관련 200개 업체 참석 항공산업 진출 활성화 KAI 설명회 개최

### ▶ 도내 중소기업체 항공산업 진출계기 마련 및 활로 모색 기회 제공

경남도청에 항공산업 관련 업체 관계자가 대규모로 한자리에 모인다. 도는 29일 오후 2시 도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홍준표 도지사와 도내 항공부품·소재생산업체 등 200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는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항공산업 진출을 위한 업체의 비전과 목표를 재설정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항공산업은 고용창출 및 생산유발 효과가 높고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사천·진주지역의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도내 많은 기업체들이 관심을 보였다.

홍 지사는 인사말에서 “항공산업을 경남의 새로운 경제 축으로 만들겠다”며, 이어 “사천·진주 항공산단을 미국의 시애틀처럼 발전시켜 경남의 항공산업이 경남 미래 50년을 먹여 살릴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천·항공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KAI와 함께 유치 노력 중인 항공정비(MRO)사업이 선정되면 도내 항공산업의 발전은 물론 중소기업에게도 제2의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KAI의 중소기업체 항공산업 진출 활성화 설명회, 도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 기업지원 8개 부서장과 참여기업체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1부 설명회는 국내 최대 항공업체인 KAI(주)의 김원근 구매본부 동반성장실장이 항공산업 전망, 경남의 항공산업 육성 및 추진전략, 협력업체 및 참여기업과의 동반성장 방안 등에 대해 직접 브리핑 한다.

2부 행사는 금융지원, 판로촉진·수출 및 전시회 지원, 창업보육 및 인력양성 지원, 기술연구 개발 지원 등 도의 기업지원시책을 먼저 소개하고 참여기업들이 평소 현장에서 기업을 하면서 느낀 불필요한 규제나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와 기원지원 소관부서장이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원근 KAI 동반성장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항공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에게 경남의 항공산업 전망과 새로운 전략사업으로서 업체의 역량을 판단하고 신규업종 진출여부 등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 : 도 기업지원단 기업지원담당  
(055)211-2953

### 건축물 감리, 공종단계별 “실명제” 도입

#### ▶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 의무화...부실공사 방지·품질강화 유도

□ 앞으로 건축물의 공사 감리가 면밀해지고 실제 참여한 시공자, 감리자 실명제가 시행되어 시공자·감리자의 책임도 커진다.

○ 즉, 현재는 총괄 감리자·시공자만 감리보고서에 서명하나 앞으로는 공종별로 실제 참여한 시공자·감리자가 체크리스트에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 또한 현재는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요 구조부에 대해 동영상 촬영과 그에 따른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이 강화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최근 저급 자재사용, 자재 누락 및 설계도서 임의 변경 등 부실한 감리 수행으로 인한 사고('14.2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14.5 아산 오피스텔 전도)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저가로 감리수주하거나, 지자체의 감독이 소홀하여 건축 감리가 부실하게 시행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판단하고 있다.

○ 실제로 마우나리조트에서 설계도서 기준에 미달하는 강재가 사용되었으나 감리자는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감리자가 확인해야 하는 업무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공사감리 기준 체계 개편

○ 공사품질을 꼼꼼히 확인하고 감리자·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리세부기준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개선한다.

○ 현재의 기준은 감리자가 업무를 서술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감리세부기준을 읽지 않고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 앞으로는 공종별로 실제 시공자와 감리자가 각각 설계도서에 따라 적절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서명을 의무화함으로써 설계도서와 감리세부기준의 내용대로 감리 업무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② 주요 공정에 대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앞으로는 기초, 지하층과 같이 매몰되는 주요부위와 철근 배근, 철골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등과 같이 주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시공자는 시공과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감리자와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재는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만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영상 촬영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5

##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 철판 두께 0.5mm 넘어야 화재안전 성능 강화

□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철판 최소 두께 기준(0.5mm)이 마련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물의 수해 등 재난에 대비하고, 샌드위치패널 화재안전성능 강화를 위해, 올해 1월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0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 이번 건축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침수방지·피난 시설 기준 마련) 침수위험 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침수를 방지하고, 고층건축물(30층이상)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 및 대피공간에 대하여 정전시에도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복합자재의 화재안전을 위한 품질관리 강화) 복합자재의 난연성능시험·판정시 심재변형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철판의 두께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마련(0.5mm)하는 등 화재 안전을 위한 복합자재 품질관리를 강화 하였다.

○ 그 외에도 특수구조 건축물은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건축 구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착공신고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5

##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 관련 건축기준 제정...지하층 제한 등 재실자 거주 질 높여

□ 빠르면 다음 달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별 개별취사가능여부 등을 정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금번 재정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건축주는 면적과 상관없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하여야 한다.

○ 또한, 다중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주거시설과의 구분을 위해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취사시설과 노대(발코니) 설치도 금지하여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다.

○ 아울러, 피난 등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법령에서 정한 피난방화기준\* 및 실별 차음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 6층이상 다중생활시설은 배연설비 설치 의무화, 호실간 경계벽은 내화구조 등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cm이상인 것 등



범죄예방기준(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도 준수하도록 하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도 예방되도록 하였다.

□ 현재 행정예고중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에 대하여는 6월 29일까지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하여 7월중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1

## 건축산업, 새로운 활로를 찾는다

### ▶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 발족식 개최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등 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하여 건축계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이하 활성화포럼)을 구성하고 5월 13일(12시)에 발족식을 개최한다.

□ 건축은 국가 인프라와 국민의 삶의 터전을 만드는 산업으로 국내 GDP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나, 고도 성장기를 지나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변하면서 과거와 같은 급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13년) GDP내 건설투자 비중은 15% (216조) / 그 중 건축이 60% (130조)

○ 또한, 최근 건축시장의 정체와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인하여 업계의 수익성은 급감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의 일자리 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 이와 같은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전통적인 설계·시공 등 기존 건축의 업무 영역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고품질화·고부가가치화 등 체질 개선을 통하여 건축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 이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산업과 관련한 모든 분야의 단체·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산·학·연과 공공기관의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활성화포럼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 활성화포럼에서는 경제 활성화, 신산업 창출에 포커스를 맞추어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 이를 전문가 T/F에서 논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금년 내에 국가 경제정책 관련 주요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 이번 활성화포럼은 국건위의 주도로 범부처적인 관점에서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건축과 관련한 모든 분야(설계, ENG, 시공, 감리)에서 함께 참여하여 시너지 창출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02)397-5506

##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일반물류터미널 內 제조판매 허용

▶ 물류시설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일자리 창출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물류시설(일반물류터미널, 물류단지)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 등이 포함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6.16)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및 실수요 검증

○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되어, 앞으로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 물류단지 총량제는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를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는 시도별 총량제로 인한 지역별 공급제한을 폐지하고 사업별 실수요 검증제를 도입하였으며,

- 앞으로 물류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물류단지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행정계획(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통해 '14년 하반기부터 총량제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 총 231만 제곱미터 규모의 물류단지 사업이 추가로 추진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물류센타를 민간기업들이 보다 쉽게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 일반물류터미널 제조·판매시설 허용

○ 또한, 일반물류터미널\*에 일부 제조시설과 판매시설이 허용된다.

\* 서울 양천구, 경기 성남, 충북 청주 등 전국 34개소

- 허용되는 시설은 화물차 관련 부품정비 등 화물차 운행에 필요한 품목 등의 제조·판매시설이다.

- 다만, 일반물류터미널의 고유기능(집화, 하역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조·판매시설의 설치 면적은 전체 부지 면적의 25% 이하로 하고,

- 지역 내 상권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일반물류터미널이 보다 활성화되고, 화물차들의 편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물류시설법 개정으로 인해 일반물류터미널의 운영 효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관  
(044)201-4006

## 중개보수 조례개정 완료, 전국적 시행

▶ 소비자의 거래 비용부담 완화...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14.11.3)한 이후, 금일 마지막으로 중개보수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조례시행(13개 시·도) : 서울(4.14), 경기(3.31), 인천(4.06), 부산(5.27), 대구(4.10), 대전(4.17), 울산(5.28), 강원(3.06), 충남(6.01), 경북(4.06), 경남(5.21), 제주(6.03), 세종(4.30)

\*\* 본회의통과(4개 시·도) : 광주(6.15), 충북(6.18), 전북(6.23), 전남(6.12)

□ 중개보수 조례가 정부권고안대로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되고,

○ 매매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에 적용됐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기존 0.9%에서 0.5%로,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8%에서 0.4%로 낮아지게 되었다.

○ 개정된 상한요율을 적용할 경우 6억 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240만 원이며 3억 원의 주택을 임차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120만 원에 달한다.

□ 지난 5월 한 달 간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거래 당사자 중 6.1%가 조례개정의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3

## “종이계약서는 옛말” ...온라인·모바일로 부동산계약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 내년 1월 서초구 시범운영

□ 앞으로 부동산거래 시 종이 없이도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실거래신고, 세무·등기 등과 통합·연계되어 계약과 관련된 제반 과정이 쉽게 처리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거래관행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국민 및 관련 사업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확장으로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차단하고 업무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약 15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1단계 전자계약시스템)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 이번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사업은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통한 권리보호 강화 및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후속조치(제2차 규제혁신과제, 정부3.0, 정상화과제)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이 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Paperless e-contract)

○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종이로 작성·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방문 없이도 언제·어디서나 전자적(공인인증 또는 태블릿PC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된다.

○ 더불어, 민간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계약내용의 위변조 검증 및 24시간 열람·발급 서비스를 제공받고, 법률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거래신뢰와 편익이 강화된다.

② 부동산 실거래신고 자동화 및 연계시스템 구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부)과 연계하여 거래가격 신고가 자동(같은) 처리됨으로써 별도로 거래신고를 하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신고가 누락되어 과태료를 내던 사례도 없어진다.

③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

○ 전자계약증서의 진본 확인 및 전월세정보시스템 연계로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신청·교부할 수 있어, 주민센터를 가지 않더라도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 비용 절감 등으로 약 3,300억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며,

○ 정확한 부동산시장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전월세 정책지원은 물론, 주거 불안·불편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각종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초 서울 서초지역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2

## 지자체장이 주택 감리자 실태 점검...부실공사 방지

### ▶ 입주자모집공고 후 변경된 사업계획 내용 입주예정자에 알려야

□ 앞으로 지자체장 등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되며,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감리자 실태점검 항목 규정,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변경내용 제공,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6.26일부터 40일간(기간 : 6.26~8.5)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규정, 시정명령·교체지시 보고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원 구성 및 운영, 시공·품질·현장관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한다.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 위 개정안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15.6.22 공포, 6개월 경과 후 시행)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②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제공

○ 입주자 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 사업주체의 경영손실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③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수 확인절차 및 교육기간 개선

○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처리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기관과 배치신고 처리기관이 동일하여 배치신고 처리기관에서 바로 교육 이수 현황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에 관한 의무교육 기간을 현재 4일에서 3일로 단축하여, 입주자의 교육훈련비 부담을 완화한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8



## 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 나면 자동으로 열린다

### ▶ 자동개폐장치 의무화...위급 상황 시 옥상을 대피공간으로 활용

□ 신축되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가 의무화된다. 위급할 경우에는 옥상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여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 또한, 주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통한 입주민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유도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기술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6.30~8.10)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

○ 방법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 이는 그동안 경찰과 교육당국에서는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하고, 소방당국에서는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 ② 친환경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 포함

○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포함한다.

- 지능형 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 이를 통해 주택 내의 에너지 사용량정보를 입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자발적인 절전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게 된다.

#### <참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 출입문 당 약 70만원 내외, 옥상은 세대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사유재산권 침해문제 없음

■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8

## 우리나라서 가장 긴 50.3km 울현터널' 뚫렸다

▶ 24일 관통행사... 차질 없는 수도권고속철도(수서 ~ 평택) 개통준비

□ 총 길이 50.3km로, 국내에서 가장 길고 세계에서는 3번째로 긴 울현터널이 완전히 뚫렸다. 국토교통부(유일호 장관)는 24일 오전 11시에 수도권고속철도 전체 구간의 83%를 차지하는 울현터널의 관통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 수도권고속철도 건설은 3조 60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서 ~ 평택 61.1km 구간에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 X자형 고속철도 망을 완성하여 철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 강남권, 경기 동남부권 시민들이 고속철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 착공에 들어갔다.

○ 수도권고속철도는 동탄신도시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중요 교통망으로 기능하는 것은 물론 국토의 진정한 반나절 생활권 실현을 완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관통행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건설공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터널 내부에서 개최되며 울현터널의 성공적 관통을 기념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고난도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한 수도권고속철도 건설', '차질 없는 개통 공정 준수'에 대한 당부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 대부분이 터널로 이뤄지는 수도권고속철도는 단층대의 분포와 싱크홀에 대한 사회적 우려 등으로 인해 안전 문제에 방점을 두고 첨단공법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공사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정밀 안전진단을 병행하여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 공사기간만 3년 5개월이 걸린 울현터널이 관통됨으로써,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도권고속철도 건설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추진경위

○ '08. 7 ~ '09. 8 : 예비타당성조사용역

○ '09.12.31 : 기본계획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10호)

\*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광역급행철도와 선로공용 추진

○ '10. 4.29 :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11. 5.27 : 사업실시계획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6호)

○ '11. 5 ~ '12. 7 : 노반공사 단계적 착공(12개 공구)

○ '13. 4. 4 : 동시시공 추진방안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의결

○ '13.12.19 : 수도권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 고시

○ '15. 3.19 : 삼성 ~ 동탄 광역급행철도 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5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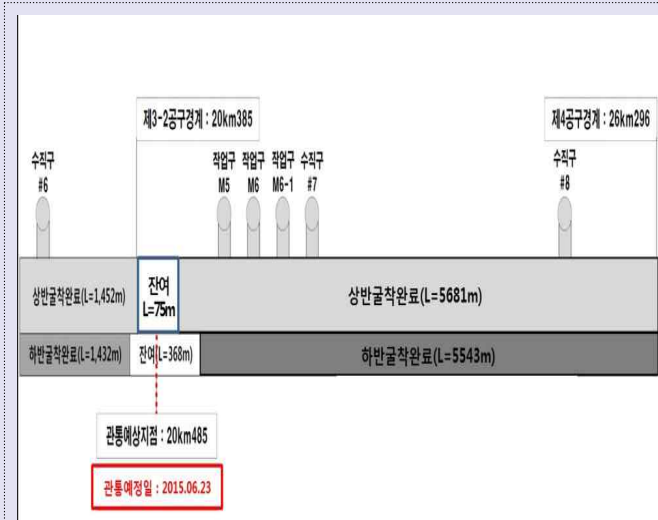
□ 율현터널 시공현황

○ 사업개요 : 수서 ~ 평택 61.1km 신설(토공 4.2km, 터널 56.9km)

구 분	율현터널
연 장	50.32km (개착포함 52.2)
굴착완료	'15. 6.23(예정)

○ 관통위치 : 율현터널, 수서 기점 20km485 지점(노반 3-2공구)

\* 상반(완료 50,216.1m, 잔여 75m), 하반(완료 49,923.1m, 잔여 368m)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1

###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1. 제정이유

- ‘건설사업관리 관련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업무를 수행 시 관련 기준의 활용성과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두 개로 나누어져 있던 규정을 하나의 고시로 통합하고, 기존의 관련 지침은 폐지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 「건설사업관리 관련 공제사업 감독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27호)」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보증사업 감독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28호)」을 폐지하고, 폐지한 기준들의 내용을 통합하여,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을 제정함
- 유사·중복되는 내용은 통합하여 조문화하고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청약저축, 청약 예·부금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며 민간중형국민주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 추진에 따라, 해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의 근거를 마련하며, 기타 주택 공급제도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주택법」 개정 추진에 따른 입주자저축 일원화 반영

「주택법」 개정 추진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 예·부금이 폐지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청약저축, 청약 예·부금 관련 내용을 삭제 또는 정리하고자 함

#### 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폐지 반영(안 제2조제8호, 제4조, 제5조의4제5항, 제6조제3항제6호,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제10호, 제11호, 제11조 제목 및 제1항 본문, 제11조의2, 제16조제2항, 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3항, 제22조제8항, 제22조의2제4항, 제26조제5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1,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주택법」 개정 추진에 따라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제도가 폐지되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관련 내용을 삭제 또는 정리하고자 함

#### 다. 보훈보상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주택 특별공급 등(안 제19조제1항제1호, 제2항제2호, 제12항, 제31조제1항제2호, 제6항, 제32조제5항제3호, 제7항)

직무수행 중 희생(순직, 공상)된 보훈보상대상자와 6.25전쟁 참전 등으로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주거 안정이 필요하므로 보훈보상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과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통해 주거를 지원코자 하는 것임

####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 규모 선택 통지 의무, 규모의 변경 조항 삭제(안 제5조의4제6항, 제5조의5제3항)

#### 마. 청약예금 미 실시 지역 등에 대한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폐지 등(안 제13조제3항)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 1. 개정이유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도서 작성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15.1.6)됨에 따라 구조검토 대상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변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규정 신설(안 1.5)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만 시공전 재검토·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는 개략 구조검토 가능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나.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항 변경 등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 설계자문 → 기술자문, 설계감리 → 건설사업관리 등) 및 인용조항 변경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1. 개정이유

도시·군관리계획 기초 조사 시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도록 규정(국토계획법 '15.1.6공포, 7.7시행)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1) 도시·군관리계획 기초 조사 시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기초조사에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2-5-2》

2) 시행령에서 규정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적용 대상을 규정 《2-5-3》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서는 경찰관서 중 파출소의 경우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점용허가 내지는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 그러나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지역경찰관서’를 ‘지구대 및 파출소’로 정의하고 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조의2에서는 경찰서장 소속하에 지구대를 두되, 도서·산간 오지·농어촌 벽지 등에는 파출소를 두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파출소만 점용허가 내지는 행위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지역경찰관서로 확대하고, 최근 설치되어지는 도시지역 내 지구대 설치규모를 감안하여 공원 및 공원주변의 효율적 치안활동을 위해 그 허용규모를 43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하면서, 지역의 여건에 따라 4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대상 확대 및 허가 기준 완화(안 제22조, 별표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중 규모가 430제곱미터 이하인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의 경우 지자체의 점용허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규모가 4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함

###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 완화(별표 2)

도시공원으로서와 동일하게 지역경찰관서를 43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며, 규모가 4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지역경찰관서의 경우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도록 함

## 신기술 정보

# 공장 생산된 박막형 점착 복합 방수시트와 콘크리트간 재료적 일체성을 가지는 건식화 복합방수 시공기술(Dry Waterproof System)

###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아하방수텍(주)
-------	----------

- 지정번호 : 제 742 호
- 명 칭 : 공장 생산된 박막형 점착 복합 방수시트와 콘크리트간 재료적 일체성을 가지는 건식화 복합방수 시공기술 (Dry Waterproof System)
- 기술분야 : 건설>구체방수 및 지하외방수
- 내용요약 :

#### (1) 범위

공장 생산된 박막형 점착 복합시트, 구멍 뚫린 보호재, 점착 유연형 썬재(드라이 썬), 부직포를 이용하여 시공과정에서 현장 배합, 프라이머, 기계식 고정 등을 배제하고 콘크리트 구조물 하부와 방수층이 재료적 일체성을 가지는 공동구 등 지하구조물의 외방수에 적용되는 건식화 복합방수 시공기술

#### (2) 내용

이 신기술은 박막형 점착 복합시트(단면, 양면 Type, 이하 드라이 점착 복합시트)와 점착 유연형 썬재(이하, 드라이 썬)의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아스팔트 수지(AP-3)를 기본으로 한 컴파운드에 프로세스 오일(KDN30S), 고무(SBS 501) 등을 170? 180℃ 고온에서 1,200? 1,300 RPM 속도로 약 90분간 용해한 후 개량 아스팔트 시트의 하단부와 상단부에 박막형태로

점착층을 형성할 수 있는 기술,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제조 및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에서 완전한 건식화 시공을 구현할 수 있는 시공기술, 콘크리트 BOX 구조물이 형성되기 전 양면 타입의 박막형 점착 복합시트를 버림 콘크리트에 포설한 후 구멍 뚫린 보호재 설치, 점착 유연형 썬재 도포, 부직포 포설한 후 현장 타설된 Fresh Concrete 또는 성형된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을 안착하여 방수층과 구조물이 재료적 일체성을 가지는 역방수 개념의 지하 외방수 건식화 시공기술(Dry Waterproof System)

###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 철근유도장비를 이용하여 종방향 철근을 자동 배근하는 동시에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연속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기술(MRCP공법)

##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삼우아이엠씨
-------	-----------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 743호
- 명 칭 : 철근유도장비를 이용하여 종방향 철근을 자동배근하는 동시에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연속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기술(MRCP공법)
- 기술분야 : 건설>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

### ○ 내용요약

#### (1) 범위

연속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기술 중 커플러 방식으로 연결시킨 종방향 철근을 자동 배근하는 철근유도장비를 이용하여 작업공간내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동시에 콘크리트를 포장하는 기술

#### (2) 내용

이 신기술은 연속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 기술 중 커플러 방식으로 연결시킨 종방향 철근을 자동 배근하는 철근유도장비를 이용하여 철근을 설계단면위치에 설치하고 작업공간내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동시에 콘크리트를 포장하는 기술

(MRCP: Mechanical-placement Reinforced Concrete Pavement)

##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신기술은 철근유도장비를 이용하여 종방향 철근의 자동배근과 동시에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기술로서 철근 연결 및 시점부 콘크리트 포설, 철근배근 및 동시 콘크리트 포설, 타이닝 및 양생 과정으로 시공된다.



<철근 연결 및 시점부 콘크리트 포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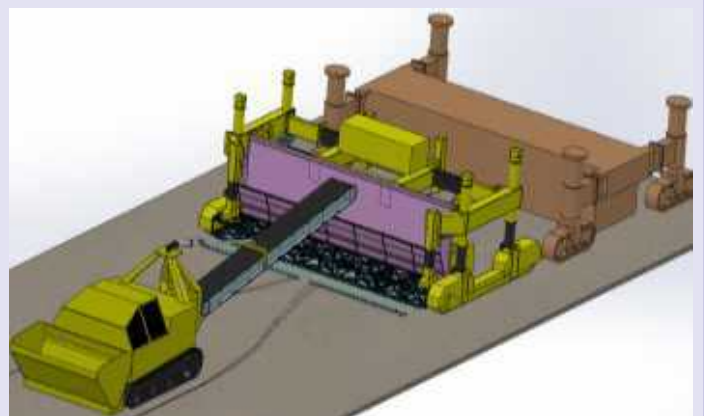
<철근배근 동시 콘크리트 포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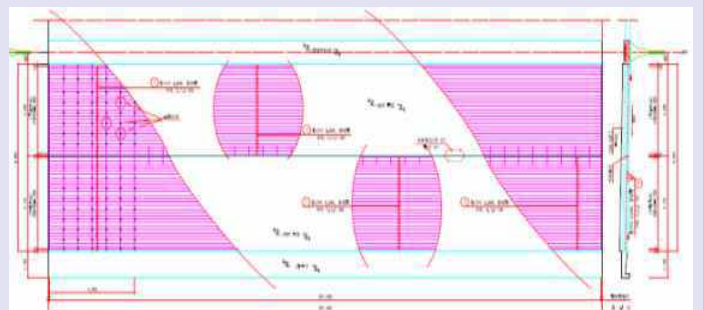
<철근 연결 및 시점부 콘크리트 포설>



<철근배근 동시 콘크리트 포설>



<개념도>



<상세도면(평면도)>

## 건설기술심의 현황

### 2015년 제5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

- 건 명 : 실시설계 적정성 1건,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2건
- 심의일자 : 2015. 6. 19.(금)

의안번호	발주청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심의의결)
2015-05-01	의령군 (안전관리과)	의령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실시설계) 사업개요 : 하천정비 L=6.70km, 128억 원	조건부 채택
2015-05-02	창원시 (환경위생과)	창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SOQ+PQ) (용역비 : 27억 원)	조건부 채택
2015-05-03	밀양시 (상하수도과)	밀양시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용역비 : 7억 원)	조건부 채택

### 2015년 제6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계획

- 심의일자 : 2015. 07. 24.(금)
- 4건(입찰방법 1건, 실시설계 2건, PQ 1건)

의안 번호	요청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발주청
2015-06-01	입찰방법	창원현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 위 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A-3BL · 사업내용 : 434세대(연면적 51,819㎡, 지상 17~25층) · 사 업 비 : 557억 원 · 사업기간 : 2016 ~ 2018년(3년)	경남 개발공사
2015-06-02	실시설계 (적정성)	양산 수질정화공원 에너지 자립화사업	· 위 치 : 양산시 동면 강변로 54 일원 · 사업내용 : 토목공사(소화조 4, 저류조 4, 공동구), 건축공사(1동, 11,820㎡), 조경·기계·전기 1식 · 사 업 비 : 261억 원 · 사업기간 : 2015 ~ 2017년(3년)	양산시 (하수과)
2015-06-03	실시설계 (적정성)	의령 자굴산 권역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의령군 가례면 갑을리 산137 일원 · 사업내용 : 토목공사, 건축공사 · 사 업 비 : 245억 원 · 사업기간 : 2015 ~ 2017년(3년)	의령군 (산림 녹지과)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심의 1건

의안 번호	안 건 명	발주청
2015-06-04	경상남도 사업분야별(도로, 하천, 도시계획, 도시개발, 상하수도, 방재, 항만, 어항, 공원, 환경 등)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변경)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를담당  
(055)211-2926



## 계약심사 현황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5년 6월	계		92	140,691	133,848	6,843	4.86%
	공사	토목	43	99,265	94,380	4,885	4.92%
		건축	13	18,386	17,392	994	5.40%
		기타	11	11,326	10,893	433	3.83%
	용역		17	10,587	10,112	475	4.48%
	물품		8	1,127	1,071	56	5.03%

■ 회계과 계약심사팀당 (055)211-3548

## 나눔 정보

### 2015년 국가기술자자격 검정시행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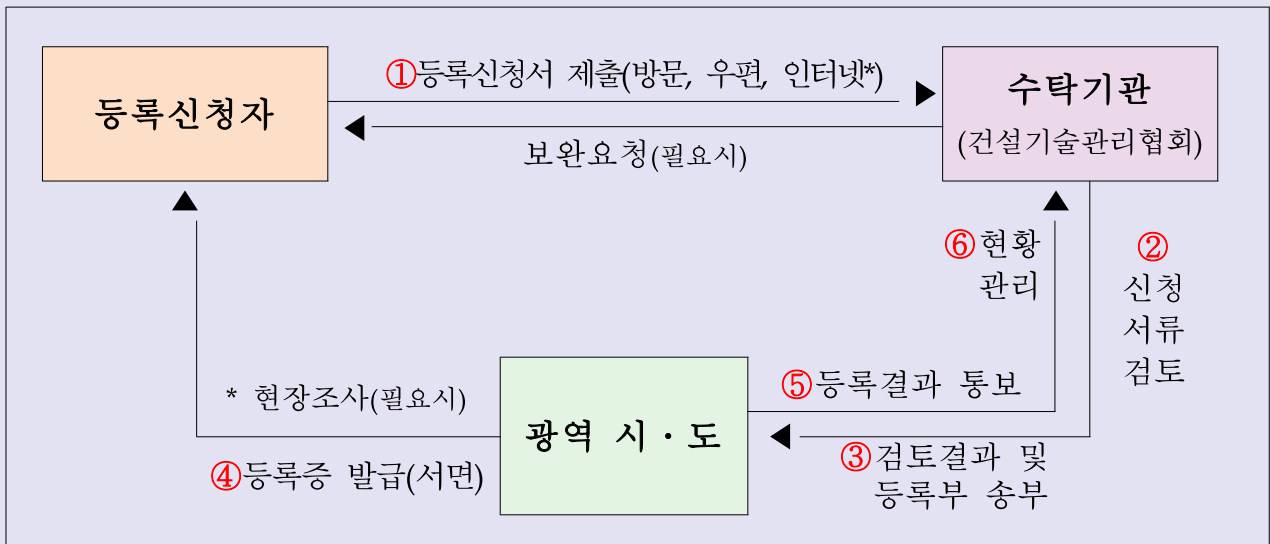
회별	회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 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방문제출)	실기(면 접) 시 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 (인 터 넷)		
기술사	제105회	1.9 ~ 1.16	2.1	3.27	3.30 ~ 4.8	4.25 ~ 5.4	5.22
					3.30 ~ 4.2		
	제106회	4.10 ~ 4.16	5.10	6.19	6.22 ~ 7.1	7.25 ~ 8.3	8.21
					6.22 ~ 6.25		
	제107회	7.3 ~ 7.9	8.1	9.18	9.21 ~ 10.02	10.17 ~ 10.26	11.13
					9.21 ~ 10.26		
기사 (산업기사)	제1회	1.30 ~ 2.5	3.8	3.20	3.23 ~ 4.1	4.18 ~ 5.1	5.8
	제2회	4.24 ~ 4.30	5.31	6.12	6.15 ~ 6.24	7.11 ~ 7.24	7.31
	제3회	7.24 ~ 7.30	8.16	8.28	8.31 ~ 9.9	10.3 ~ 10.16	10.23
	제4회	8.21 ~ 8.27	9.19	10.8	10.12 ~ 10.21	11.7 ~ 11.20	12.18

■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 안내

- 2014. 5. 23.자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등의 업역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단일화 되었으며, 이와 관련 등록 및 변경등록 등 민원의 접수·확인 및 관리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를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 <① 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신청인)
- <② 단계> : 신청서 접수, 고유 관리번호 부여, 서류 검토(관리협회)
- <③ 단계> : 등록서류 검토결과 통보(관리협회→해당 시·도)
- <④ 단계> : 등록증 발급(해당 시·도→신청인)
- <⑤ 단계> : 등록결과 통보(해당 시·도→관리협회)
- <⑥ 단계> : 등록결과 접수, 용역업자 등록번호 등재·관리(관리협회)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실국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재 신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2923~6

FAX : (055)211-2919

e-mail : [ccs0673@korea.kr](mailto:ccs0673@korea.kr)(담당자 최춘수)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